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의안번호	207
------	-----

제출년월일 : 2001. 4.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 규정

주요골자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고,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게되는 도시계획의 반영기준 및 절차등을 규정.
- 도시계획 입안시 공람·공고를 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중 지목이 대(垓)인 경우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함.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행위 허용범위를 정함.
- 지구단위계획의 지역대상 및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등의 설치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토석채취 허가기준, 물건적치행위 허가기준 등을 정함.
- 지역·지구 및 구역안의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와 건폐율, 용적을 등을 정함.
- 평창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절차에 관하여 규정.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별 첨
- 기타참고사항 : 별 첨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우리군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명시한 도시기능 등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 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에 초점을 두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2 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성격·위상)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도시관리 등의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가칭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를 한시적 운영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①군수는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 공람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종 계획에의 반영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 시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는 자문단 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이후에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대신할 수 없다.

제7조(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방법 등) ①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행정구역 내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법 제9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에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등) ①법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경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 3 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9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 ①군수는 법 제20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 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절차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축허가의 제한을 건축법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계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

제14조(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17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영 제38조제4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 5 장 지구단위계획

제18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구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구

제1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영 제24조제3항각호의 변경
2. 가구 및 획지면적의 20분의 1이내의 변경
3. 건축물의 높이의 20분의 1이내의 변경

제20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창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 6 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21조(조건부여 기준)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부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이행보증금) ①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군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 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구

제1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영 제24조제3항각호의 변경
2. 가구 및 획지면적의 20분의 1이내의 변경
3. 건축물의 높이의 20분의 1이내의 변경

제20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창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 6 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21조(조건부여 기준)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부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이행보증금) ①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군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 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허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3조(공공단체) 영 제48조제2항에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4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지역 고시)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가 원료된 지역으로 하며 그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고시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에 추가하여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에도 하여야 한다.

제25조(허가절차)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대상토지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 토석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6조(행위허가의 취소 등)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 보관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른 공사의 경우
3. 공사가 부실한 경우
4.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 시행 등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한 토지로 확보가 부득이한 경우
5. 기타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
6. 3차에 걸쳐 준공기간을 연기하고 준공하지 아니할 때
7. 준공사유가 부당할 때
8. 허가후 1개월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9.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검사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기한을 경과 한때
10. 본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7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규정 중 제1호가목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

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
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중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
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
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규정중 제1호 다목의 도시계획조례로 정
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3. 표고 100미터 미만인 토지

제28조(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영 제50
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
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
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
도록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 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실은 열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의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우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8.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9.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한다.

제29조(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2호 나목 단서규정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0조(안전조치 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 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31조(토석의 채취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지역을 포함하여 제30조의 일반적인 행위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

제32조(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33조(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적치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적치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제 7 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제한

제 1 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4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17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5

6. 준주거지역 : 별표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12
13. 준공업지역 : 별표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16

제35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14. 보존녹지지역 :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60)

제36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구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

적의 제공비율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지구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상업지역

제 2 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7조(용도제한) ①영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 나. 위험물제조소
 - 다. 위험물저장소
 - 라.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의 제1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8조(건폐율)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35조에서 정한 건폐율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3. 시가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4. 조망권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각호에서 정한 면적의 50%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각호에서 정한 높이의 30%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시가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조망권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용도제한) ①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 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요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관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 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 미관지구 : 2층이하
3. 일반 미관지구 : 2층이상

②군수가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조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저어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 한다)·주유소·공장·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 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44조(건축물의 모양)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 4 절 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73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및 건축조례 해당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방재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창고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동물관련시설
5.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48조(보존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위락시설
2. 공장
3. 창고시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 동물관련시설
7.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4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판매 및 영업시설
3.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공장
7. 창고시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묘지관련시설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을 제외한다)
 -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다. 철도역사
 - 라. 공항시설
 - 마.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위락시설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주차장
 -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공공용시설중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51조(공항시설보호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2조(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정한다.

②취락지구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3조(개발촉진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정한다.

②개발촉진지구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4조(전통한옥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 및 주거생활환경의 전통적 분위기를 보호·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한옥지구를 지정·공고하고 건축물의 규모, 양식, 구조, 형태, 색채, 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한옥지구로 지정된 경우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과 제37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통한옥지구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보행자우선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우선지구 안 또는 걸친 토지의 건축물은 부설 주차장의 차량진출입 동선을 보행자우선지구의 주요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게 설치할 수 없다.
 ②보행자우선지구 안 또는 걸친 토지의 건축물은 주요 보행자도로변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이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다음 각호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과 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이 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다.

1. 문화지구
2. 산업활동장려지구
3. 외국인투자촉진지구

제 8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57조(설치) 법 제85조제2항 및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5.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①법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실과장과 군의회 위원 1인이상으로 한다.
- ④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62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후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6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회의 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군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6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7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징수절차) 령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 9 장 보 칙

제6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 영 부칙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율의 적용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 및 용적율의 범위 이내로 하며, 건폐율은 60퍼센트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1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1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평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 내지 제40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장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별표1 제8호의 교육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2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 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장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3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마.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과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 나.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 다.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며,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라.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4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마.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 나.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이하인 것

- 라.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 마.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제외한다)
- 바.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아.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5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마.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 나.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별표1 제6호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
- 라.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 마.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바.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아.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 자.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6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5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라.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마.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다.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라.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 마.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 바.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 사.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제외)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7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마.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 바.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 사.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 아.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나.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다.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8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100분의 90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 나.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라.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바.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 사.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 아.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 자.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 차.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 카.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나.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다.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 라.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폐차매매장 제외)
- 마.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9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6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라.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다.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 라.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매매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바.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제외)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0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다.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다.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 라.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마.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바.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제외)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1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별표1 제13호의 공장
- 라.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 마.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사.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아.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적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다목적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 다목적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

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에 해당되는 것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2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별표11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다.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3】

중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3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별표12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나. 제13호의 공장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라.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함)
- 다.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 마.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4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나.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다.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 라.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신축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신축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5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 라.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가목의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미.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 바.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 사.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 아.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 나.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6호관련)

1.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1호 단독주택
 - 나.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 마.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바.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 아.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카.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에 한한다)
 - 나.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별표1 제6호의 농,임,축,수산업관련 판매 및 영업시설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발췌

○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

번호	법 조 문	주 요 내 용
1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	○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2	○ 도시계획법 제22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3	○ 도시계획법 제36조	○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4	○ 도시계획법 제37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6조	○ 공동구의 점·사용에 대한 정용료 및 사용료 등을 조례로 규정
5	○ 도시계획법제40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8조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하여 규정
6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0조	○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
7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7조	○ 개발행위 대상중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
8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8조	○ 개발행위 허가 대상중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
9	○ 도시계획법 제49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9조	○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규정함과, 허가기준 및 절차등을 규정
10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8조, 제60조.	○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
11	○ 도시계획법 제54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	○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
12	○ 도시계획법 제55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	○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
13	○ 도시계획법 제86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6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주민공람 · 공고 결과 확인서

- 공고일시 : 2000. 7. 6 ~7.25(20일간)
- 공고위치 : 군보 및 읍·면 게시판, 평창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및 입법예고문
- 공고결과
 - 평창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하였으나 의견제출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0. 10. 24

확 인 자 : 도시경제과 지방토목주사보 심 재



담당자	담	장	관	수	권자인
심재호	기안부	권결	심재호		✓

평 창 군 수 귀 하

건폐율 및 용적율 조례안

○ 건폐율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법령상 허용범위	평창군 조례(안)	원주시 조례(안)	동해시 조례(안)	기존평창군 건축조례	비고
전용 주거지역	제1종	50%이하	50	40	50	50	
	제2종	50%이하	50	30	40		
일반 주거지역	제1종	60%이하	60	60	60	60	
	제2종	60%이하	60	60	60		
	제3종	50%이하	50	50	50		
준주거지역	-	70%이하	70	60	70	70	
상업지역	중심상업	90%이하	90	70	90	90	
	일반상업	80%이하	80	60	80	80	
	근린상업	70%이하	70	60	70	70	
	유통상업	80%이하	80	60	80	80	
공업지역	전용공업	70%이하	70	70	70	70	
	일반공업	70%이하	70	60	70	70	
	준공업	70%이하	70	60	70	70	
녹지지역	생산녹지	20%이하 (40)	20 (40)	20 (40)	10 (40)	20 (40)	
	보전녹지	20%이하 (40)	20 (40)	20 (40)	20 (40)	20 (40)	
	자연녹지	20%이하 (40)	20 (40)	20 (40)	20 (40)	20 (40)	

※ () 내서는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임

○ 용적율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법령상 허용범위	평창군 조례(안)	원주시 조례(안)	동해시 조례(안)	기존평창군 건축조례	비고
전용 주거지역	제1종	50-100	100	80	80	100	
	제2종	100-150	150	150	150		
일반 주거지역	제1종	100-200	200	150	150	400	
	제2종	150-250	250	250	200		
	제3종	200-300	300	250	250		
준주거지역	-	200-700	700	300	400	700	
상업지역	중심상업	400-1,500	1,500	900	800	1,500	
	일반상업	300-1,300	1,300	500	600	1,300	
	근린상업	200-900	900	400	500	900	
	유통상업	200-1,100	1,100	400	500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	150-300	300	250	250	300	
	일반공업	200-350	350	350	300	350	
	준공업	200-400	400	250	250	400	
녹지지역	생산녹지	50-100	100	50	50	200	
	보전녹지	50-80	80	50	50	80	
	자연녹지	50-100	100	80	80	100	